「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 02. 16 (월) 심재국 의원외 2인

나. 회부일자 : 2009. 03.03 (화)

다. 상정일자 : 2009. 03.03 (화) 제1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평창군의회 의원 심재국)

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평창군의 책무를 마련함.(안 제3조)

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개발 · 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군수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주현관)

가. 본 조례안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보면,

○ 군수는 다양한 노일일자리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다. 위 조례안은,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생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유도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조례 형식, 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군 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